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 위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홈페이지 공개>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04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3. 17.

3. 회 부 일 : 2025. 3. 1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중대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더라도 그 위반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조치 실효성 및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명을 공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8조의4 신설).

주요내용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범죄로 인하여 유죄가 확정되거나 또는 과태료(1천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08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죄를 범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1]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8조의4(위법선거여론조사기관명 등의 공개) ①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 유죄확정은 1심 또는 2심 재판에서 상소하지 않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상고심(대법원)의 유죄판결까지 나와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함.

유죄 확정 사실 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의 홈페이지 공개는 일종의 명단공개제도(위반사실공표)로서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이나 법인명, 위반 사실, 의무위반에 따른 처분 사실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함으로써 의무위반자의 명예 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부담시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제도임.[2)]

명단공개(신상정보공개)가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공개되는 개인의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재판을 통해 공개된 공적 기록의 하나로 국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를 공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3)]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죄를 범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여론조사기관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 남기연·유소미, “국민체육진흥법상 명단공개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7권2호(2024), p.79. “이러한 명단공개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1980년에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도입되었고, 법률 차원에서는 2003년에 ”국세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되었음.” 오승규·유동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권 12호(2020), p.11.

3) 헌법재판소 2003.6.26.선고 2002헌가14 판례

다만,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유죄 확정만으로(액수와 관계없이) 해당 사실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태료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의 경우에만 해당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기준이 되는 처벌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4)]

《 (참고)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

구분		처벌 사유
조항	호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256①)	5.	여론조사 금지행위(§108⑤) 위반하여 여론조사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256③)	1.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의무(§108①) 위반하여 그 결과 공표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61②)	2.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시 선거여론조사기준 미공표·미보도
	3.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 홈페이지 미등록
	4.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 등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61③)	5.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 하거나 보완사항 미보완하고 여론조사 실시

유사 입법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액수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

4) 참고로, 개정안 제104조의4제1항에서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명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죄확정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록 규정하고 있음.[5)]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688호,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

《 유사 개정안의 비교 》

구 분	한민수의원안 (의안번호 제2207688호)	양부남의원안 (의안번호 제2209004호)
공개기준 처벌수준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공개사항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	**해당 사실**과 **선거여론조사기관명**, **대표자 성명**,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
공개장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명을 공개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332